

2007. 10.

수 신 : 제천시의회 의장

**제 목 :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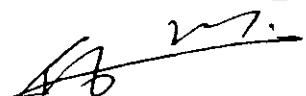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9회  
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불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불 임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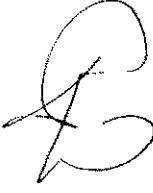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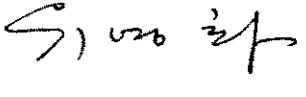
2.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발의자 : 성명중 의원 (서명또는 날인)

외 4인



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의안발의서명서

의원성명	서명 또는 날인	비고
성명중		
강현수		
김명섭		
최기호		
이은미		

##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188
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7. 10.  
발의자 : 성명중 의원외 4인

#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전문개정과,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 및 시행령 조항을 적합하게 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가.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문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 및 시행령 규정에 맞게 조정함.(안 제1조 등)

#### ○ 제1조(목적)

- 「지방자치법」 “제32조의 2” 를 「지방자치법」 “제34조”로
- 지방자치법 시행령 “제15조의3” 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“제35조”로

#### ○ 제2조(정의)

- 제1항 중 「지방자치법」 “제53조” 를 「지방자치법」 “제61조”로
-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“제15조” 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“제33조”로 한다.

붙임 1.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
2. 신·구 조문 대비 표 끝.

##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「지방자치법」 “제32조의 2” 를 「지방자치법」 “제34조”로  
지방자치법 시행령 “제15조의3” 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“제35조”로 개정

제2조제1항 중 「지방자치법」 “제53조” 를 「지방자치법」 “제61조”로  
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“제15조” 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 
“제33조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          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<u>제32조의2</u> 및            동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 <u>제15조의3의</u>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           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원의 직무상 사망,            장애,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          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           ..... <u>제34조</u>.....            .....  <u>제35조</u>.....            .....            .....            .....</p>
<p><b>제2조(정의)</b>         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          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직무”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           (지방자치법 <u>제53조</u>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          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를 포함한다.)          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          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          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.</li> <li>2. “의정활동비”라 함은 영 <u>제15조</u> 규정에           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.</li> <li>3. (생략)</li> </ol>	<p><b>제2조(정의)</b>            .....            .....            1. .... <u>제61조</u>.....            .....            .....            .....            .....            .....            2. .... <u>제33조</u>.....            .....            3. (현행과 같음)</p>